

연장근로에 따른 아동돌봄 형태와 일 가족 갈등: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를 중심으로

Variations in Childcare Style and Work-Family Conflict Related  
to Extended Working Hours: Focusing on Employed Mothers  
of Preschoolers or Elementary-School Children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연구기획팀  
책임연구원 성혜영

Research Team, Korea Social Service Institute  
Senior Researcher : Heayoung S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관련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employed mothers' extended working hours have effects on childcare style and work-family conflicts. The data came from the 2007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KLoWF) of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475 females with preschoolers or elementary-school children were used in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Weekly average working hours varied by education, salary, and the presence of preschoolers. (2) The time of childcare was significantly shorter in mothers who work more than 50 hours/week (3) Mothers who worked more than 50 hours/week felt significantly high work-family conflict. These analyses pointed to the importance of obeying the law related to working hours a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sustain work-family balance. Institutional foundations should be enabled to keep legal working hours.

**주제어(Key Words)** : 연장근로(extended working hour), 일 가족 갈등(work-family conflict), 일 가족 양립(work-family balance)

##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2005년도의 1.08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통계청, 2006)은 저출산 문제를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각시켰다. 출산율의 저하는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연금, 의료비, 기타 사회보장 비용의 증대라는 문제를 파생시킨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마지2010’이라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6).

이 대책은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료 지원액의 확대로 여성이 일하는데 장애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이 최초 저출산 대책인 엔젤플랜(厚生労働省, 1994)에서 보육시설을 확충해 보육소 대기아동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보육시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시설 확충에 집중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의 발달로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액을 확대하는데 보다 노력하였다.

두 나라는 모두 일과 아동의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데다가 육아휴직이나 탄력근무가 원활하지 않고 주당 근로시간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월등히 높다. 이러한 탓에 가능한 장시간 동안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야간보육 등 다양한 보육형태를 고안해 아동을 보육시설에 머물게 함으로써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대신에 영아보육이나 시간연장보육 등을 통한 시설 중심의 보육정책을 펴는 것은 과잉보육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아동권리 보장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혜경과 류왕효(2006)는 시간연장 보육 아동이 종일제 보육아동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으므로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서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 실시에 대한 반성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장영인(2009)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육납용과 장시간 보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보육시간 연장을 제한해 아동을 위한 부모양육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종일보육을 전제로 보육료를 지원하여 전업주부의 자녀도 필요 이상의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지내게되는 현행 보육제도는 고비용,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아동 개개인의 욕구에도 맞지 않는다(한유미, 2009)는 비판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참여권 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설 보육의 확대가 아닌 일 가족양립을 중심으로 한 저출산 정책

이 추진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 협약은 부모가 자녀를 지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제5조) 아동양육 및 발달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제18조) 부모는 아동 이익의 최선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행동하여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p. 72). 이러한 관점은 영국의 아동계획(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7)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계획에는 ‘아이는 국가가 아닌 부모가 키우는 것이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즉 아동양육의 권리와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국가는 부모가 아동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지원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온 일본의 경우도 보육지원 중심의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2000년 초반부터는 일가족 양립으로 정책의 중심을 변경하기에 이른다(한현미, 2010). 2002년 발표한 소자화 대책 플러스원(厚生労働省, 2002)에서는 소자화의 배경을 가정보다 일을 우선하는 풍토에 있다고 진단하고 근로시간과 생활시간의 조화나 일과 가족의 양립 지원을 보육서비스 확충보다 우선에 두었다. 2004년에 발표한 아동·아동양육 응원플랜(厚生労働省, 2004)이나 2010년의 아동·아동양육 비전(厚生労働省, 2010)에서도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일과 생활이 조화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 가족 양립정책은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형태에서부터 궁극적으로는 적절한 가족시간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내는 것까지를 포함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p. 5). 이러한 일 가족 양립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정근로 시간의 준수다.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제도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복직이후 연장근로가 계속된다면 아동이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이로 인해 여성은 일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이 일 자체를 포기하거나 전일제 근로를 포기하게 할 수 있어 여성의 노동참여권 보장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모의 연장근로가 아동 돌봄 형태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지 살펴보고 일 가족 갈등 유발 정도를 검증해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근로시간에 따른 아동 돌봄 형태는 어떠한가?
  - 2-1. 근로시간에 따라 아동 돌봄 시간에 차이가 있는가?

- 2-2. 근로시간에 따라 아동 돌봄 비용에 차이가 있는가?  
 2-3. 근로시간에 따라 아동의 시설이용 시간에 차이가 있는가?  
 2-4. 근로시간에 따라 아동 돌봄 인원에 차이가 있는가?  
 3. 근로시간에 따른 일 가족 갈등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II. 관련연구 고찰

### 1. 여성 취업자의 근로시간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에 40시간을 연장할 수 없고 1일에 8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월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표 1〉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주당평균 근로시간

단위(시간)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47.5	47.0	46.2	45.9	45.7	45.1	44.2	43.5
남자	47.8	47.4	46.6	46.3	46.0	45.6	44.6	43.9
여자	46.7	46.0	45.3	44.9	44.7	44.1	43.1	42.5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년도

〈표 2〉 OECD 국가들의 근로시간 및 노동생산성

1인당 연간근로시간 순위	국가명	GDP (단위: US \$)	1인당 연간근로시간 (단위: 시간)	총 근로시간 (단위: 천시간)	GDP/ 총근로시간	노동생산성 순위
1	칠레	242,984	2,402	15,707	15.5	34
2	한국	1,344,360	2,256	53,148	25.3	27
3	그리스	324,711	2,152	10,128	32.1	22
4	체코	256,890	1,992	10,536	24.4	28
5	폴란드	659,183	1,990	31,435	21.0	32
6	헝가리	198,069	1,989	8,212	24.1	29
7	에스토니아	27,686	1,969	1,265	21.9	31
8	슬로베니아	56,339	1,956	1,935	29.1	25
9	이스라엘	203,951	1,943	5,908	34.5	21
10	터키	991,715	1,918	41,636	23.8	30
11	멕시코	1,545,330	1,893	83,088	18.6	33
12	이탈리아	1,871,709	1,802	45,511	41.1	18
13	아이슬란드	11,805	1,795	321	36.8	20
14	일본	4,358,326	1,771	113,670	38.3	19
15	슬로바키아	119,690	1,769	3,958	30.2	24
16	뉴질랜드	116,390	1,753	3,819	30.5	23
17	포르투갈	247,326	1,745	8,982	27.5	26
18	호주	831,247	1,732	18,685	44.5	13
19	캐나다	1,300,244	1,727	30,064	43.2	16
20	핀란드	190,833	1,705	4,321	44.2	14
21	미국	14,369,400	1,703	259,873	55.3	4
22	영국	2,185,955	1,653	48,676	44.9	11
23	스페인	1,434,159	1,647	33,770	42.5	17
24	스위스	329,853	1,642	7,382	44.7	12
25	오스트리아	315,601	1,626	6,921	45.6	9
26	스웨덴	340,527	1,626	7,411	45.9	10
27	아일랜드	184,351	1,607	3,371	54.7	5
28	덴마크	202,151	1,587	4,639	43.6	15
29	벨기에	377,862	1,568	6,995	54.0	6
30	프랑스	2,121,724	1,544	39,901	53.2	7
31	룩셈부르크	41,391	1,528	533	77.6	1
32	독일	2,909,687	1,430	57,583	50.5	8
33	노르웨이	279,962	1,422	3,723	75.2	2
34	네덜란드	675,079	1,392	12,162	55.5	3
	OECD-TOTAL	40,135,529	1,740	960,451	41.8	-

OECD Stat Extracts.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0년 47.5시간에서 점차로 낮아져 2007년에는 43.5시간인 것을 알 수 있다. 남녀모두 매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2007년을 기준으로 남성은 43.9시간, 여성은 42.5시간이다.

그러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대단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256시간에 이르는데 총 근로시간 대비 GDP가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와 비교할 때 728시간이 차이가 나며 우리나라와 근로환경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485시간의 차이를 보여 잦은 연장근로와 휴일 없이 일하는 근로문화를 알 수 있게 한다. 연간 총 근로시간 대비 GDP를 노동생산성 지표로 삼았을 때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27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부모의 장시간 근로는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결과를 낳게 한다. 맞벌이 부부 중 여자배우자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당 5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가 25.3%에 이르며 임금근로자 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20.1%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를 집중적으로 양육하게 되는 시기인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54시간 이상 근로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유무가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일이 잦을 경우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적어지고 보육시설이나 추가적인 양육조력자를 필요로 하게되어 양육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장시간 근로로 인해 자녀 양육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일과 가족생활 간의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장시간 근로에 따른 아동 돌봄 형태와 일가족 갈등

취업모의 근로 시간에 따라 아동 돌봄 형태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많지 않지만 취업

모 자녀의 일반적 양육실태에 관한 연구들은 찾아볼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취업모 자녀의 방과후 보호형태에 관한 연구(오선영, 이숙, 2002)를 살펴보면 혼자 집에 남아있는 자기보호 아동이 연구대상의 42.3%에 달했으며 이러한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다니고 있는 학원 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 감독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외로움은 유의하게 낮고 자아 유능감에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어머니의 자녀 감독정도란 아동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동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취업모가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확보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한다.

보육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비교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8시간 이상 이용율이 유의하게 높았다(황혜경, 정미미, 2008). 또한 모의 취업여부는 보육기관 이용여부 및 보육비 지출액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백선희, 조성우, 200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비교한 것으로써 취업모의 근로시간에 따른 아동 돌봄 형태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맞벌이 가족을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수용하는 이인소득자 사회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로만 양분하여 아동 돌봄 형태를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취업모의 일 가족 갈등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1990년대 까지는 일 가족 갈등의 해결방안을 개인적이거나 가족적 차원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지지나 가족의 지지가 일 가족갈등 수준을 낮추거나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나(박성옥, 김정호, 1995; 이희정, 이숙현, 1995; 조영주, 이숙현, 1998) 시간관리전략, 대처행동 등을 통해 일 가족 균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연구들이(이기영, 구혜령, 1992; 윤혜리, 1996; 조은숙, 옥선화, 1998) 그것인데 이러한 시도들은 가족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는 있으나 일 가족 갈등의 원인을 개인과 가족에게 부여하는 한계를 가진다. 2005년 이

<표 3> 맞벌이 부부 여자배우자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

(단위 : %)

연령	35시간 이하	36~44 시간	45~53 시간	54시간 이상	합계
15~29세	15.3	37.7	24.9	22.1	100
30~39세	19.8	37.8	26.3	16.2	100
40~49세	22.7	30.0	20.8	26.5	100
50~59세	21.7	24.4	23.0	31.0	100
60세 이상	41.0	18.3	14.7	26.0	100
전체	23.9	28.9	21.8	25.3	100
임금근로자	21.2	34.7	24.1	20.1	100

통계청, 2009 사회조사보고서

후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일 가족 양립에 대한 주제가 부각되면서 일 가족의 균형은 개인적 가족적 전략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장시간 근로와 같이 일 가족 갈등을 유발하는 실증적인 원인을 찾아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근로시간에 따른 일 가족 갈등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진서영(2007)의 연구에서 하루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일 가족 갈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취업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일과 어머니역할 갈등이 높다는 연구결과(최연화, 조복희, 2007)도 있었다. 이를 비롯해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어 있을수록 취업모의 일 가족갈등이 낮다는 연구(이세인, 2006)도 보고되었다. 따라서 취업모의 주당 근로시간 정도에 따라 일 가족갈등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I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2007년 제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중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49세 이하 기혼 여성 중 임금근로자를 추출하고 여기서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475명의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N(%)	M(S.D)
연령	20~29세	28(5.9)	36.52(4.52)
	30~39세	333(70.1)	
	40~49세	114(24.0)	
학력	고졸 이하	203(42.7)	-
	초대졸 이상	272(57.3)	
급여수준 (월 평균급여)	100만원 이하	157(33.7)	165.41(93.09)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192(41.2)	
	200만원 초과	117(25.1)	
	무응답	9	
미취학아동 유무	유	270(56.8)	-
	무	205(43.2)	
초등학교 아동 유무	유	293(61.7)	-
	무	182(38.3)	
주당 평균근로시간	36~40시간	221(46.5)	45.65(8.99)
	41시간~50시간	191(40.2)	
	51시간 이상	63(13.3)	

#### 2. 연구변수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다음 <표 5>와 같다.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사용하였으며 근로시간에 따른 아동돌봄 형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을 구분하였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36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집단과 주당평균 10시간 이하 연장근로를 하는 집단, 10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5> 연구변수

변수명	변수설명	속성, 단위
근로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시간
근로시간 집단	주당 평균 근로시간대별 집단 구분	51시간 이상 = 상 41시간~50시간 이하 = 중 40시간 이하 = 하
아동 돌봄 시간	본인이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육아 및 집안일을 하는 시간 합	분
아동 돌봄 비용	<미취학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개인교습, 학원 비용 및 아동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월평균 비용의 총합	만원
	<초등학교 아동> 학원, 방과후교실, 직장보육시설, 개인교습에 지불하는 월평균 비용의 총합	만원
시설 이용시간	<미취학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개인교습, 학원의 주당 이용시간	시간
	<초등학교 아동> 학원, 방과후교실, 보육시설, 개인교습의 주당 이용시간	시간
아동 돌봄 인원	부모 이외 자녀 양육 조력자 유무	조력자 있음 = 1 조력자 없음 = 0
일 가족 갈등	직장 생활이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가족생활이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수준 높음 최저 9점 ~ 최고 36점

아동돌봄 시간은 육아를 포함해 집안일을 하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아동돌봄 비용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 1인당 자녀돌봄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과 보육시설 혹은 사교육 시설에 보내는 월평균 비용을 모두 합산하였으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사교육시설에 보내는 비용을 모두 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시설이용시간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개인교습, 학원을 이용하는 주당 평균시간을 활용하였고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학원, 방과후교실, 보육시설, 개인교습을 이용하는 주당 평균시간을 활용하였다. 아동돌봄 인원은 부부를 제외하고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사용하였다.

일 가족갈등은 직장생활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생활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합한 총점을 활용하였다.

직장생활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항은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 진다’,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의 5문항이다. 가족생활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의 4문항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에서는 가족생활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 중 5번째 문항인 ‘식구 중 환자가 생겨서 일을 그만 둘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의 경우 해당없음이 26.9%에 달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1,2,3번 문항과 가정생활

에 일에 미치는 영향 1,2번 문항은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hi^2$  검증, *t*-검증,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주당 근로시간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미취학자녀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는 주당 근로시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가 주당 근로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t* = 2.60, *p* < .05). 두 집단의 차이가 주당 2시간 정도에 불과하긴 하나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약 45.6시간이므로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에 약 1.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고 보았을 때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가 이틀정도 연장근로를 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급여에 따라서도 주당 평균근로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 = 7.31, *p* < .01) 사후 검증결과 평균 급여 ‘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주당 근로시간이 유의하게 짧았다. 학력 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 집단이 대졸이상 학력 집단보다 유의하게 주당 근로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t* = 6.06, *p* < .001).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주당 근로시간에 따른 아동 돌봄 형태의 차이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표 6>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의 차이

(전체 *N* = 1,672명)

독립변수	종속변수		검증통계량
	<i>N</i>	주당 근로시간 <i>M(S,D)</i>	
미취학자녀 유무	유 = 270	44.72(7.63)	<i>t</i> = 2.60*
	무 = 205	46.87(10.41)	
연령	20대 = 28	43.00(4.13)	<i>F</i> = 1.96
	30대 = 333	45.53(8.51)	
	40대 = 114	46.65(10.94)	
급여 수준	상(200만원 초과) = 117	43.37(5.89) a	<i>F</i> = 7.31**
	중(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192	45.67(9.01) b	
	하(100만원 이하) = 157	47.55(10.56) b	
학력	고졸이하 = 203	48.44(11.46)	<i>t</i> = 6.06***
	초대졸이상 = 272	43.56(5.77)	

\**p* < .05, \*\**p* < .01, \*\*\**p* < .001, ab :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아동 돌봄 형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돌봄 시간은 근로시간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 = 2.97, p < .05$ ). 사후검증 결과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집단의 아동돌봄 시간이 다른 두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단, 근로시간 '중'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아동돌봄 시간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으로 측정된 것을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각각 13.2시간과 12.2시간으로 주당 약1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근로시간 '상' 집단의 경우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9.4시간으로 '중' 집단과는 3.8시간, '하' 집단과는 2.8시간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시간의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아동돌봄 시간이 유의하게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돌봄 비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미취학 아동을 둔 경우와 초등학교 아동을 둔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경우 모두 유의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다.

주당 근로시간이 긴 집단의 시설 이용시간이 더 길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나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모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이 긴 집단의 경우 부모 이외 아동을 돌보는 조력자를 두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3. 주당 근로시간에 따른 일 가족 갈등 수준의 차이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일 가족 갈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7.22, p < .01$ ). 사후검증 결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근로시간이 주당 50시간을 초과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일 가족 갈등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7> 주당근로시간에 따른 아동돌봄 형태의 차이

		주당 근로시간		
		상 51시간 이상	중 41시간~50시간	하 35시간~40시간
아동돌봄 시간	N	64	191	220
	M(S,D) 검증통계량	569.21(461.57) a	797.46(721.14) b $F = 2.97^*$	732.37(620.79) b
아동돌봄 비용	N	22	84	106
	M(S,D) 검증통계량	23.40(19.95)	46.97(55.01) $F = 2.43$	43.07(38.92)
시설이용 시간	N	26	111	133
	M(S,D) 검증통계량	31.35(18.54)	25.43(21.91) $F = 1.26$	24.34(19.83)
아동돌봄 인원	N	50	118	125
	M(S,D) 검증통계량	13.34(12.95)	14.92(12.73) $F = .36$	15.11(12.85)
아동돌봄 인원	조력자 유 N	12(19.04%)	48(25.26%)	58(26.36%)
	조력자 무 N 검증통계량	51(80.96%)	142(74.74%) $\chi^2 = 1.74$	162(73.64%)

주. 무응답으로 인한 결측치로 인해 <표4>에 제시된 근로시간 집단별 N 값과 차이가 있음.

\* $p < .05$ , ab :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표 8> 주당 근로시간에 따른 일 가족 갈등

		주당 근로시간		
		상	중	하
일 가족갈등	N	63	191	213
	M(S,D) 검증통계량	21.19(3.24) a	19.79(3.69) b $F = 7.22^{**}$	19.22(3.27) b

주. 무응답으로 인한 결측치로 인해 <표4>에 제시된 근로시간 집단별 N 값과 차이가 있음.

\*\* $p < .01$ , ab :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미취학자녀 유무, 급여수준,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급여수준이 높은 경우, 학력 수준이 높은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짧았다.

둘째, 연장근로시간의 정도에 따라 아동 돌봄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당 연장근로 시간이 10시간 초과인 집단의 경우 아동을 돌보는 시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다. 취업모의 장시간 노동은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연장근로시간의 정도에 따라 일 가족 갈등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하루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일 가족 갈등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진서영(2007)의 연구 및 취업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일과 어머니역할 갈등이 높다는 연구결과(최연화, 조복희, 2007)를 지지하였다.

넷째, 아동 돌봄 비용이나, 시설이용 시간, 아동 돌봄 인원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연장근로시간이 높은 집단의 경우 부부 이외에 아동의 돌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다른 집단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근로시간이 긴 집단의 경우 아동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시간의 연장근로는 아동 돌봄 시간을 감소시키고 일 가족 갈등 수준을 증가시켜 아동이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을 권리와 여성의 노동 참여권을 저해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는 일 가족 양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EU의 경우 잔업시간을 포함한 최대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 수요의 증가를 낳아 고용을 창출하려는 기대와 과잉취업을 완화해 일 가족을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을 바꾸려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山口一男, 2010, p. 360).

우리나라는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지속적인 야근으로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가 월간 연장근로 시간을 10시간 이상 입력하지 못하도록 한 회사의 조치로 인해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연합뉴스, 2010)는 이러한 상황을 말해준다. 山口一男(2010, p. 360)는 최대 근로시간의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저항이 클 경우 EU처럼 주당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취업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유효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도 적용 가능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일 가족 양립으로 저출산 정책기조를 변경한 이래 일본의 출산율은 2005년 1.26, 2006년 1.32, 2007년 1.34, 2008년 1.37로 상승되어 2010년 발표한 아동양육비전에서는 소자화의 흐름에 반전하고 있다는 고무된 어조를 싣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차기 저출산 대책을 일 가정 양립 중심으로 설계하고 정책의 주요 분야로 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시설 이용시간이나 돌봄 인원에 근로 시간 집단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아동 혼자 집에 남아있는 자기보호 아동의 수는 모의 근무시간에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오히려 아동의 연령이나 형제자매 유무와 같은 변수가 시설 이용시간이나 돌봄 인원에 차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부분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정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의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돌봐 줄 별도의 조력자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동의 고립과 이로 인한 정서적 문제, 범죄에의 노출 등 2차적인 문제가 지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심각하다 하겠다. 선행연구(오선영, 이숙, 2002)에서도 자기보호 아동은 성인보호나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 자아유능감이 낮고 외로움 수준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기보호 아동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준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저 급여, 저 학력 집단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장근로 수당 등 금전적인 목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미국과 같은 수준이며 일본의 20.5% 이상 50% 이하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높은 비율의 연장근로 수당은 고용주의 부담을 유발하므로 과잉근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되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와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삼성경제연구소(2008)의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를 하게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소득보전을 위해 연장근로를 선호하고 근로 시간 단축을 소득삭감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꼽고 있다. 추가 소득을 위한 연장근로의 유인이 내재 한다면 이는 가구의 소득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가치판단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결국 장시간 근로의 지속은 업무 피로의 시간을 해소하지 못하게 하여 근로자 개인의 건강을 해침은 물론 일과 가족의 양립을 어렵게 하여 더 큰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혜경, 류왕효(2006). 시간연장 보육아동의 스트레스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5, 207-225.
- 노동부(각년도).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대한민국정부(2006).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박성욱, 김정훈(1995) 취업모의 가정생활과 일의 균형을 위한 방안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3(4), 13-25.
- 백선희, 조성우(2005) 미취학 자녀의 보육·교육비 지출수준과 결정요인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 429-455.
- 보건복지부(2009).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서울: 보건복지부.
- 삼성경제연구소(2008). 장시간 근로실태와 개선방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 오선영, 이숙(2002). 초등학교 저학년 취업모 자녀의 방과후 보호형태와 어머니의 애정 및 감독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대한가정학회지 2002년 제55차 정기총회 및 추계 학술대회논문집**, 92-93.
- 윤혜리(1996). 취업주부의 시간관리 전략과 심리적 복지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영, 구혜령(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 갈등과 갈등대처 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99-112.
- 이세인(2006). 취업모의 일-가족갈등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정, 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 장영인(2009). 보육재정 지원방식으로서의 보육바우처의 재조명: 아동권리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58, 189-217.
- 조영주, 이숙현(1998). 사무직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 수준과 사회적 지원 변인. **생활과학논집**, 12, 94-103.
- 조은숙, 옥선화(1998).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 및 관련변수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2), 55-71.
- 진서영(2007) 기업의 가족친화 제도가 기혼직장인의 직장-가정간 갈등 및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연화, 조복희(2007). 취업모의 직장환경, 양육시간에 따른 일-어머니 역할갈등. **한국보육지원학회지**, 3(1), 1-15.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정책이용실태 및 일가족양립현실**.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유미(2009). 보육바우처 도입의 과제: 미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3(1), 33-56.
- 허혜옥(2007). 일·가정 갈등과 노동시간 선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경, 정미미(2008). 강원도 보육시설에 대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이용실태, 만족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 차이. **한국영유아보육학**, 53, 199-218.
- 통계청(2006). **2005년 출생·사망 통계결과**.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09). **사회조사보고서**. 대전: 통계청.
- 연합뉴스(2010. 03. 05). 후진적 야근문화 언제 바뀌나.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7), **Children's Plan**. UK.
- OECD. Stat Extracts. <http://stats.oecd.org>
- 厚生労働省(1994). 今後の子育て支援のために施策の基本的方向について
- 厚生労働省(2002). 少子化対策プラスワン
- 厚生労働省(2004). 子ども・子育て応援プラン
- 厚生労働省(2010). 子ども・子育てビジョン
- 山口一男(2010). **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実証と政策提言**. 東京: 日本経済新聞出版社.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이충남(역).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원저발간)

접 수 일 : 2010년 6월 9일

심사시작일 : 2010년 7월 6일

게재확정일 : 2010년 9월 2일